

제308회 임시회
2012. 4. 25.(수)

심 사 보 고 서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1



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2. 4. 25.(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2년 4월 6일
- 다. 회부일자 : 2012년 4월 10일
- 라. 상정일자 : 2012년 4월 18일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경용)

가.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한 공장용지를 우리 도가 유치하는 업체에게 매각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처분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재산 매각》

- 사업기간 : 2012. 4. ~ 12.
- 위 치 :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1번지 일원
- 매각재산 : 토지 5필지 70,909㎡ 2,269백만원(예비감정가)

(단위 : m²,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비고
소계	5 필지		70,909	2,269,088	
1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1	임야	62,479	1,999,328	
2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488	답	893	28,576	
3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499-2	답	4,730	151,360	
4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500-1	전	1,210	38,720	
5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500-2	전	1,597	51,104	

- 매수업체 : (주)다현코리아 등 3개사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연병호)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공장입지여건이 취약하여 기업유치가 되지 않아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지역인 보은군 지역에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2009년도에 도유재산으로 조성한 공장용지를 우리 도가 유치하는 업체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다현코리아 등 3개사로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 25-1번지 외 4필지 70,909㎡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2009년도 매수가 9억 3,167만원의 토지를 22억 6,908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제 301 호
----------	---------

제출연월일 : 2012년 4월 6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한 공장용지를 우리 도가 유치하는 업체에게 매각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처분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재산 매각》

- 사업기간 : 2012. 4. ~ 12.
- 위 치 :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1번지 일원
- 매각재산 : 토지 5필지 70,909㎡ 2,269백만원(예비감정가)

(단위 : ㎡, 천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추정가격	비고
소계	5 필지		70,909	2,269,088	
1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1	임야	62,479	1,999,328	
2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488	답	893	28,576	
3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499-2	답	4,730	151,360	
4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500-1	전	1,210	38,720	
5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500-2	전	1,597	51,104	

- 매수업체 : (주)다현코리아 등 3개사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12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 득	계	토지	3	354,495.8	32,383,000				3	354,495.80	32,383,000
		건물	3	7,515.2	12,700,000				3	7,515.20	12,700,000
		기타									
	매 입	토지	3	354,495.8	32,383,000				3	354,495.80	32,383,000
		건물									
		기타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3	7,515.2	12,700,000				3	7,515.20	12,700,000	
	기타										
처 분	계	토지	1	15,347.00	6,180,225	1	70,909.00	2,269,088	2	86,256.00	8,449,313
		건물	1	10,680.68	2,255,262				1	10,680.68	2,255,262
		기타									
	매 각	토지	1	15,347.00	6,180,225	1	70,909.00	2,269,088	2	86,256.00	8,449,313
		건물	1	10,680.68	2,255,262				1	10,680.68	2,255,262
		기타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201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14-4)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상 면적	추정가액	매각 시기	매각사유	매 수 희망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 건	70,909	70,909	2,269,088				
	건물								
	기타								
1	토지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1번지 등 5필지	70,909	70,909	2,269,088	2012	기업유치	(주)다현코리아 등 3개사	
	건물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법령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